



TaxFlash

Tax Indonesia /
November 2018 / No.13.

세무상 외국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의
개정 P1

세무상 외국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의 개정

인도네시아는 세무상 외국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의 조항을 개정을 위하여 2018년 11월 21일에 DGT규정 No.PER-25/PJ/2018 (PER-25)을 발표하였습니다. PER-25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의 DGT규정 No.PER-10/PJ/2017을 폐지합니다. 이전 규정에 따른 거주자 증명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효합니다.

거주자 증명서(CoD) 양식의 변경

PER-25는 신규 CoD 기준을 규정하며, 동 기준은 기존의 DGT-1 Form과 DGT-2 Form을 통합하여 하나의 DGT For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DGT Form은 하기와 표와 같이 7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세무상 외국 거주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Sections | Content | 작성자 | | | 권한있는 당국 또는 세무당국 |
|----------|--|---------------|---------------------|----|--------------------|
| | | 세무상 외국거주자의 유형 | | | |
| | | 개인 | 법인유형 은행/ 연금펀드 | 기타 | |
| Part I | 세무상 외국 거주자의 정보 | √ | √ | √ | |
| Part II | 거주자 확인서 또는 세무상 거주자 확인서 | | | | √ |
| Part III | 세무상 외국 거주자 확인 및 조세조약 남용방지에 대한 신고 | | √ | | |

| | | | | | |
|----------|---|---|--|---|--|
| Part IV | 세무상 외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 방지 신고(개인) | √ | | | |
| Part V | 세무상 외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 방지 신고(기타-비개인) | | | √ | |
| Part VI | 소득이 배당, 이자 및 로열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테스트 | | | √ | |
| Part VII | 세무상 외국 거주자로서 거주자 상태(status)에 대한 신고 | √ | | √ | |

신규 DGT Form은 더 이상 거래 유형 및 관련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DGT Form은 거주자 증명서로서의 우선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에 하나의 DGT Form의 작성만 요구됩니다. 즉, 기존의 DGT Form은 거래별로 작성이 필요했던 반면에, 신규 DGT Form은 거래별로 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기간동안 하나의 DGT Form만이 작성이 요구됩니다.

DGT Form은 최대 12개월까지 유효하며, PER-25에서는 세무회계연도(fiscal year)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신규 DGT Form은 복수의 세무회계연도 중에 12개월 동안에 대하여 유효할 수 있습니다.

PER-25 규정 하에서는, 개인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IDX)에서 거래되는 채권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금융기관 또는 연금펀드와 같이 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하여 DGT Form의 Part V 및 VI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DGT Form 신고 조항의 개념적 변화

조세조약 남용 방지 테스트(Prevention of treaty abuse tests)

PER-25는 Part V(기존 DGT-1 Form의 Part VI)에 질문 6번을 추가함으로써, DGT Form이 PER-25에 보다 일관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질문 6: 법인의 설립 또는 거래의 실행에 있어서 기업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 "The entity has the same legal form and economic substance either in the entity's establishment or the execution of the transaction").

또한, PER-25는 질문 11번을 통하여 조세조약 남용방지 테스트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질문11: 거래의 목적은 조세조약의 목적과 실질에 반하여 관련 조세조약 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is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a benefit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that is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ax treaty").

동 개정의 취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절감(tax cost reduction)이 발생하거나 양국 모두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네시아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의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자간 협약에 명시된 Principle Purpose Test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권 테스트 (Beneficial ownership tests)

수익적 소유권 테스트 중 하나는 특정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청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익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기존 규정과 동일). PER-25는 고용인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공과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예외사항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기업의 수익에 50%를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이러한 수익적 소유권에 대한 테스트를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절차의 개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GT Form은 해당기간 전체에 대하여 한번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정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GT Form의 보고는 세부적인 DGT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DGT Form의 정보가 입력되게 될 것입니다.

DGT Form의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a. 세무상 외국 거주자는 DGT Form을 작성하여, 최초의 인도네시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b. 원천징수의무자는 DGT Form이 관련 정보를 DGT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가 제출되는 시점에 제출확인서가 발부되며, 동 제출확인서는 세무상 외국 거주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DGT Form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DGT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DGT Form과 전자시스템에 제출된 정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DGT Form이 우선합니다.

2. DGT Form이 적용되는 기간 내에 후속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a. 세무상 외국 거주자는 해당기간 내에 후속적인 거래에 대하여 신규로 DGT Form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일하거나 상이한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세무상 외국 거주자는 후속적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존의 DGT Form의 제출확인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b. 후속 원천징수의무자는 DGT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제출확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DGT Form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세무상 외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세무상 외국 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원천징수세 납부고지서(tax slip)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전자양식 또는 전산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 하드카피). DGT Form의 제출확인서는 DGT Form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납부기간의 도래시에 월별 Article 26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 특정 조세조약 상대국에 대한 세금환급 관련 규정 및 CoD 요구조건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끝.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Taehun Jung
taehun.jung@id.pwc.com

Inhyuk Park
inhyuk.park@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 | | |
|--|--|--|
|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
|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
|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
|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
|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
| Amit Sharma amit.xz.sharma@id.pwc.com |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
|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
|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
|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
|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
|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
|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
|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id.pwc.com |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
|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
|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8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